

## 4-4.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보고

### □ 추진배경

#### 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도·감독 등)
- 서울의료원 정관 제40조(정관의 변경)

#### ○ 필요성

- 강남분원 폐업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정원 감소정
-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조직진단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
- 보건복지부 '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' 지정으로 센터 신설
-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명칭 변경
- '임금피크제 별도 정원'을 지침에 따라 정원외 관리(삭제)
- 종료사업(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) 정원 감소정
-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 통보 반영하여 정원 조정

### □ 주요내용

#### ○ 강남분원 폐업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

- 강남분원 한시적 운영 계획, 건물노후화 등에 따라 폐업 추진함에 따라 소재지,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

#### [강남분원 폐업 추진 주요내용]

##### ● 추진사유

-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병원일부·장례식장 한시적 운영계획(서울시, 2010)  
2011.3월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신축·이전됨에 따라 동남권 저소득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식장을 **한시적으로 운영**하고자 함
-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및 건물 노후화 등에 따라 강남분원 폐업 추진

##### ● 추진절차 (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의료법)

- 폐업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, 보건복지부 협의 등 완료
- 폐업 절차 이행을 위하여 휴업 중(2022.05~)
- 향후 서울의료원 이사회 심의의결 후 보건소 폐업신고 예정(상반기 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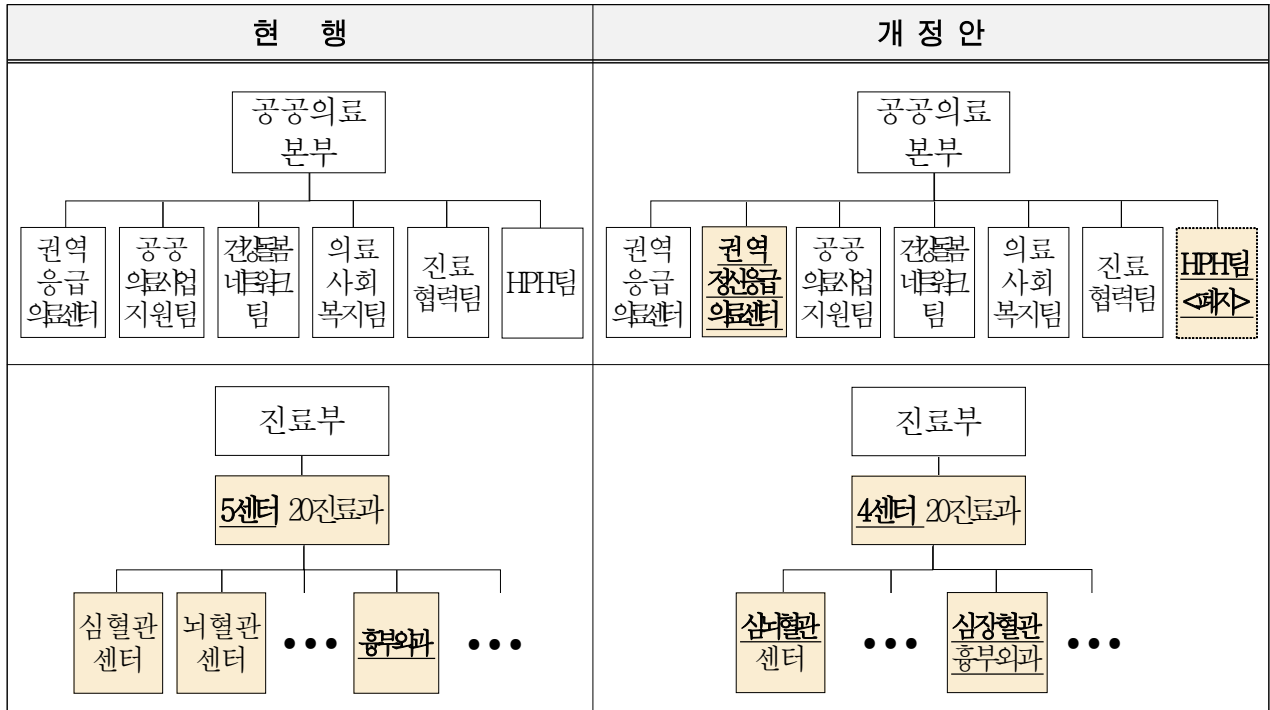
##### ● 폐업에 따른 조치 계획

- 진료 중단 사전 안내, 진료기록부 등 본원 이전 완료 및 사본발급 지원 등 이용객 편의 제공

○ 조직 변경 : 1팀 감, 진료과명 변경

(현행) 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8팀, 1연구소, 2위원회

(개정안) 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7팀, 1연구소, 2위원회



-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조직진단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른 조직 효율화 : 1센터 감, 1팀 감

※ 심혈관센터 및 뇌혈관센터 통합 ⇒ 심뇌혈관센터 (1센터 감)

※ HPH(Health Promotion Hospital)팀 폐지 ⇒ 의료원 내 업무 조정 (1팀 감)

- 보건복지부 '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' 지정으로 센터 신설 : 1센터 증

※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지침(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, 2022.03)

- 진료과명 변경 : 흉부외과 ⇒ 심장혈관흉부외과

※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(보건복지부령 제918호, 2022.11)

○ 정원 조정 : 16명 감, 32명 삭제

구분	계	임원	의료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임금피세 별도정원
현행	1,953	3	283	20	800	178	159	9	249	220	32
조정(안)	1,905	3	284	19	798	175	155	9	242	220	삭제
증감	△48	-	1	△1	△2	△3	△4	-	△7	-	△32

- 강남분원 폐업에 따른 정원 감조정 : 13명 감
  - ※ 약무직 △1명, 간호직 △2명, 보건직 △3명, 관리직 △2명, 기능직 △5명
  - ※ 강남분원 근무인력은 본원으로 배치 완료
- '임금피크제 별도 정원'을 정원의 관리 : 32명 삭제
  - ※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(행정자치부, 2015.09) 반영
-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사업종료 : 4명 감
  - ※ 관리직 △2명, 기능직 △2명, 2021년 사업이관에 따른 후속조치
-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 통보 반영하여 의사직 정원 조정 : 1명 증
  - ※ 현재 : 103명(레지던트 82명, 인턴 21명) ⇒ 개정(안) : 104명(레지던트 82명, 인턴 22명)

## □ 2023년 추진계획
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: '23.03월
  - 정관 개정 및 시행 : '23.04월
- ※ 추진과정에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

붙임.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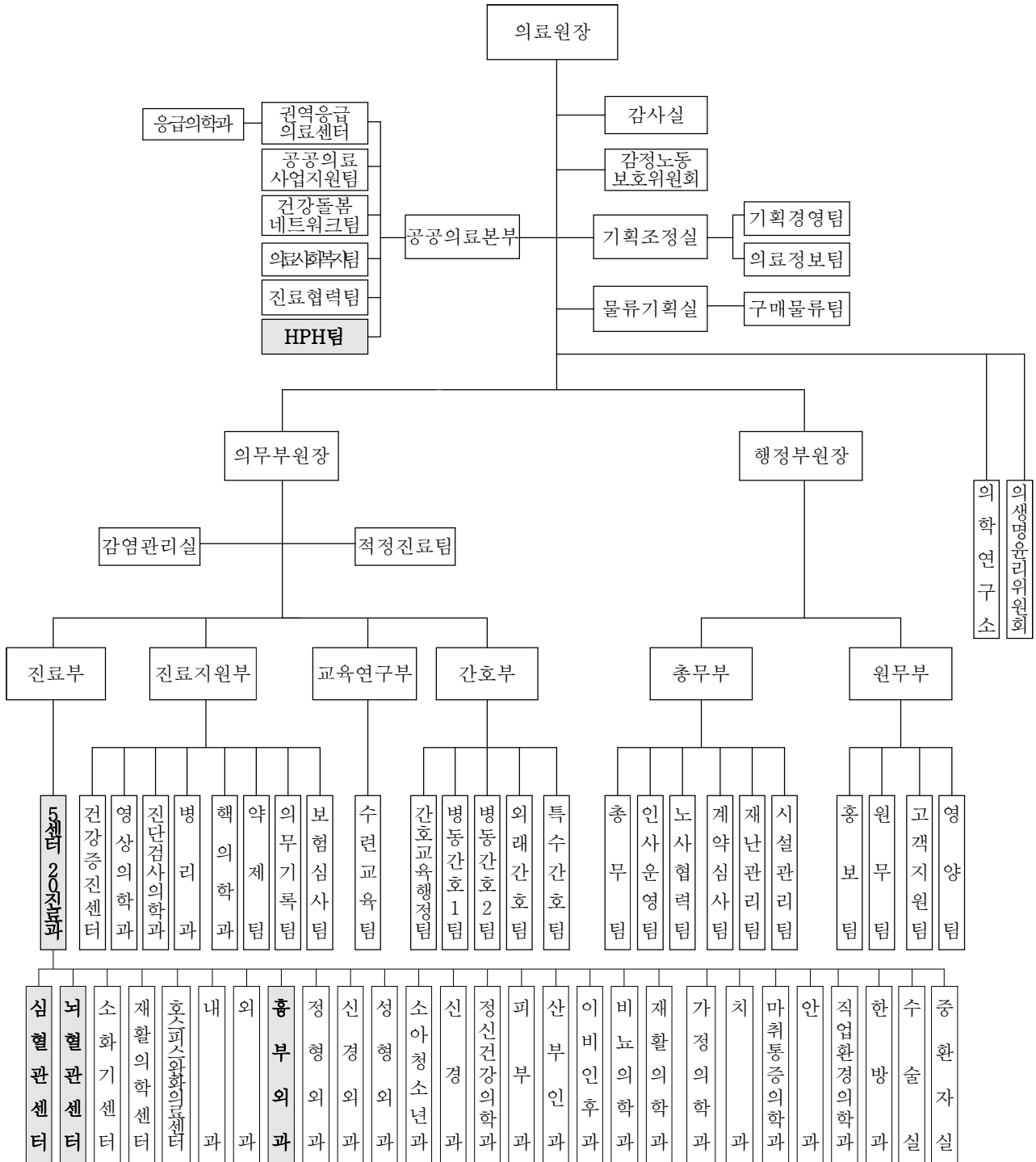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</b> ① 의료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에 둔다.</p> <p>② <u>의료원 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에 두며</u> 필요시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별도의 분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<b>제3조의1(분원)</b> ① 제3조제2항 분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(이하 “강남분원”)으로 한다.</p> <p>② 강남분원장은 분원 의료원장이 겸직한다. 다만 강남분원 운영사항은 선임진료과장을 두어 분원 의료원장을 대신하여 총괄하도록 한다.</p> <p>③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 <p><b>제41조(조직 및 정원)</b> ① 의료원의 조직은 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<u>28팀</u>, 1연구소, 2위원회로 <u>별표 1</u>과 같다.</p> <p>②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 2</u>와 같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<b>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의료원은 필요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 <p><b>제41조(조직 및 정원)</b> ① ----- ----- 27팀, ----- ----- <u>별표 1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별표 2</u>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< 개 정 전 >

[별표 1]

## 기 구 표

(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8팀, 1연구소, 2위원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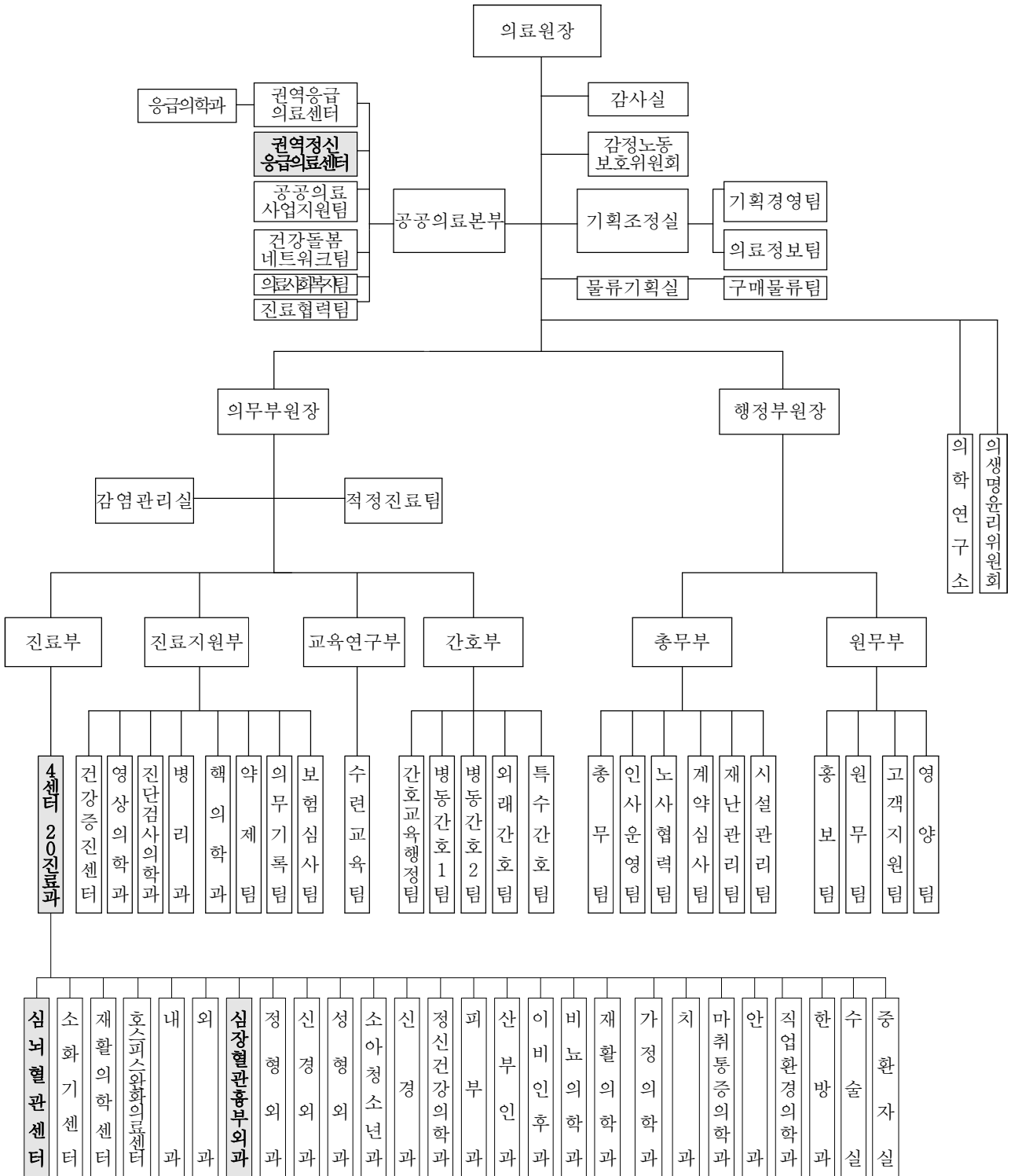


# < 개 정 후 >

[별표 1]

## 기 구 표

(6부 4실 1본부, 7센터 25진료과 27팀, 1연구소, 2위원회)



## < 개 정 전 · 후 >

### 정 원 표

○ 총괄

구분	계	임원	의료직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연구직	기능직	운영지원직	임금피크제 별도정원	
정원	개정전	<u>1,953</u>	3	<u>283</u>	<u>20</u>	<u>800</u>	<u>178</u>	<u>159</u>	9	<u>249</u>	220	<u>32</u>
	개정후	<u>1,905</u>	3	<u>284</u>	<u>19</u>	<u>798</u>	<u>175</u>	<u>155</u>	9	<u>242</u>	220	삭제
	증감	<u>△48</u>	-	<u>1</u>	<u>△1</u>	<u>△2</u>	<u>△3</u>	<u>△4</u>	-	<u>△7</u>	-	<u>△32</u>

○ 의료직

구분	계	전문의	일반의	전공의	
정원	개정전	<u>283</u>	177	3	<u>103</u>
	개정후	<u>284</u>	177	3	<u>104</u>
	증감	<u>1</u>	-	-	<u>1</u>

○ 약무·간호·보건·관리·연구·기능·운영지원직·임금피크제 별도정원

구분	계	1 급				2 급				3 급				약무·간호·보건·관리직 4~6급	연구직	기능직 (1~3 등급)	운영지원직	임금피크제 별도정원				
		계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계	약무직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계	약무직						간호직	보건직	관리직	
정원	개정전	<u>1,667</u>	3	-	1	-	2	18	1	7	4	6	61	2	29	12	18	<u>1,075</u>	9	<u>249</u>	220	<u>32</u>
	개정후	<u>1,618</u>	3	-	1	-	2	18	1	7	4	6	61	2	29	12	18	<u>1,065</u>	9	<u>242</u>	220	삭제
	증감	<u>△49</u>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<u>△10</u>	-	<u>△7</u>	-